

산학협력단 박사후연구원 임용 관리지침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산학협력단 박사후연구원 임용 관리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사후연구원의 연구참여에 따른 임용 및 근로계약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박사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박사학위 취득후 본교의 전임교수이상의 교원의 지도를 받아 전문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부설 연구소 또는 사업단(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원에 대하여 외부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자격) 연구원은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본교 박사후 과정에 대한 규정 제2조(자격)에 의한 자로 한다.

제5조 (소 속) 연구원의 소속은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구소 또는 사업단(센터)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임용절차 및 임용서류) 연구원은 연구책임자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과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며, 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 관리 지침 제4조(임용절차 및 임용서류)2항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다

제7조 (임용기간) ① 연구원의 임용기간은 연구비 지급 기간을 임용기간으로 하되, 연구사업 및 과제기간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을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임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 및 급여) 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 관리 지침 제6조(계약) 및 제7조(급여)를 준용한다

제9조 (계약변경, 면직, 퇴직금) 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 관리 지침 제8조(계약변경) 및 제9조(면직),제10조(퇴직금)을 준용한다

제10조 (준용 및 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관리지

침을 준용하며 및 기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본 지침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연구원은 이 지침에 의거하여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